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·해제 절차

구 분	추진 절차	비 고
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	◦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우선 실시	집중관리(지정심의 상정대상) 및 관심 대상 분류
지정예정지 열람 공고	◦ 사전협의 절차를 위한 열람 공고 - 소재지, 면적, 사유, 기간 등	관보, 공보, 소유자 등
이의신청	◦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	열람공고 기간내(30일 이상)
지정위원회 심의	◦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	10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
이의신청 결정통지	◦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통지	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
지 정	◦ 이의신청 완료 후 지정고시	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
유지관리	◦ 사방댐 등 사방사업 우선 시행	연차별 사방사업계획 작성
지정해제	◦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지정목적 달성	담당자 현장확인 및 위원회 심의